

[] 폐업
[] 휴업 신고서
[] 휴업재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[] 제조업자	업체명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[] 수리업자	사업장 주소	사업장 전화번호	사업장 팩스번호
[] 계량증명업자			
[] 자체수리자	공장 주소	공장 전화번호	공장 팩스번호
[] 수입업자			

폐업일 · 휴업일 · 휴업재개일	년 월 일
등록증 · 지정증 · 신고확인증 분실사유	
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([] 폐업, [] 휴업, []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)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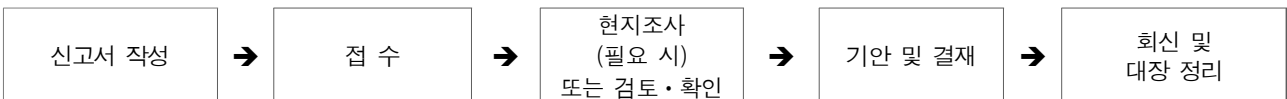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귀하
· 구청장

신고인 첨부서류	등록증,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※ 등록증,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,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참고사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처리 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(계량업무 담당 부서)